



**Department of
Education**

Chancellor Richard A. Carranza

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:

2018-2019 학년도에 귀 자녀는 보건 서비스 (약물투여 등) 또는 재활법 504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. NYC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도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신규 승인을 **필요로 합니다**. 신규 승인은 귀 자녀가 여전히 학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또한 귀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. 가장 최신의 약물 투여 양식 (MAF)을 통해 학교 간호사는 귀 자녀의 담당 의사가 전년도 자녀에게 처방했던 약물이나 치료에 변화를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학교 간호사는 이 정보를 통해 귀 자녀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많은 부모님들께서 매년 이맘때쯤 자녀의 연례 신체검사 및 캠프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합니다. 이 때, 다음 학년도 준비도 미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. 이번에 자녀가 의사와 약속을 잡은 경우, 본 안내문에 첨부된 조정양식도 함께 작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투약 양식 좌측 상단에 자녀의 최신 사진을 부착하십시오.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귀 자녀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
당뇨 MAF를 제외한 모든 기타 약물 투여 양식 (MAF):

- 학년도 마지막 날 이전인 경우:
 - 약물 투여 양식(MAF)을 자녀의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하십시오.
 - 교육 편의제공 갱신 요청 양식은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십시오: _____.
- 여름방학 중인 경우, 이 양식들을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:

귀 자녀가 새학년도 시작과 함께 승인된 서비스를 받게 하시려면 반드시 **2019년 5월 31일** 까지 본 양식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